|  |  |  |
| --- | --- | ---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고**  2016년 제22호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 법률 개정과 관련한 결정》을 심의 통과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을 심사비준제로부터 등록관리제로 변경하였다.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실시하는 범위는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5년 개정)> 중 제한 및 금지영역, 그리고 장려영역 중 지분권 요구, 고위급 관리자 요구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며, 외자 인수합병에 따른 기업 설립 및 변경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2016년 10월 8일 |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商务部公告**  2016年第22号  　　2016年9月3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审议通过《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等四部法律的决定》，将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由审批改为备案管理。经国务院批准，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范围按《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中限制类和禁止类，以及鼓励类中有股权要求、高管要求的有关规定执行。涉及外资并购设立企业及变更的，按现行有关规定执行。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  2016年10月8日 |